

(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참조1)

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1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1. 5.

발 의 자 : 지관근 의원 등 16인

□ 제안이유

-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%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1개 연구단체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 (안 제15조)
-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성남시의회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. (안 제16조)

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(연구활동비 지급 등)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%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- ③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,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⑥ 연구단체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.

제16조(존속기한)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성남시의회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〈신 설〉	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(연구활동비 지급 등)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%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. ②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 ③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,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 ④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 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 ⑥ 연구단체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.
〈신 설〉	제16조(존속기한)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성남시의회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.
제15조(시행규칙) (생략)	제17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5조와 같음)